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년월일	2017년 월 일 제 회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제안년월일	2017년 월 일
운 용 부 서	주거복지지원처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어린이집 임대료 책정방법을 개선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하자보수충당금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고객만족에 기여

2. 주요골자

- 가. 어린이집 갱신계약시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과 연계하여 책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안 제26조제1항제2호)
- 나. 집행실적이 미미한 하자보수충당금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고객만족에 기여(안 제16조제2항제3호)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성 하자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하며, 임대료 전액을 계약체결일에 일시불로 수납하거나 3개월씩 균분하여 분할·수납하되, 분납 선택 시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료 전액의 30%를 계약체결일에, 분납금액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3개월이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각각 수납한다.”를 “한다. 다만, 어린이집 갱신계약시에는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5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계약체결일에 일시불로 수납하거나 3개월씩 균분하여 분할·수납하되, 분납 선택 시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료 전액의 30%를 계약체결일에, 분납금액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3개월이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각각 수납한다.

부 칙(2017. . .)

이 시행세칙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6조(하자보수충당금 적립 및 사용)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신설〉 3.~4.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16조(하자보수충당금 적립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3. <u>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성 하자</u>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집행실적이 미미한 하자보수충당금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고객만족에 기여
제26조(임대조건 등) ① (생략) 1. (생략) 2. 임대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임대료 전액을 계약체결일에 일시불로 수납하거나 3개월씩 균분하여 분할·수납하되, 분납 선택 시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료 전액의 30%를 계약체결일에, 분납금액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3개월이 끝나는	제26조(임대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임대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갱신계약시에는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5 이내로 한다.	- 어린이집 갱신계약시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과 연계하여 책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달의 말일까지 각각 수납한다. 〈신설〉 3.~5. (생략) ② (생략)	3.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계약체결일에 일시불로 수납하거나 3개월씩 균분하여 분할·수납하되, 분납 선택 시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료 전액의 30%를 계약체결일에, 분납금액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3개월이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각각 수납한다. 4.~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보육료수입 책정방법 등 세부내용은 시행세칙 개정후 방침 시달예정 - 제2호에서 분리